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. 8. 12 선고 2020가단38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단체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8. 12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경북 의성군 D 전 682㎡와 E 도로 541㎡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96. 3. 5. 접수 제27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이슬기

별지